##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영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672

발의연월일: 2021. 6. 8.

발 의 자:오영환・이규민・유정주

서영교 · 김병기 · 한준호

송재호 • 박 정 • 송옥주

송갑석 · 임오경 · 남인순

이원욱 · 김성주 · 장경태

고용진 · 임호선 · 윤준병

문정복 · 김승남 의워

(2001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되어 전력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익사업 부분과 전력분야 기술인력 개발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 제49조의 기금의 사용처 중 전기화재와 관련해서는 예방을 위한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사업,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전기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비, 대응분야의 사업도 고도화되어야 함에도 대비·대응분야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없음. 따라서 전기로

인한 화재로부터 전기사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도 전력 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기화재 대비·대응을 위한 소화장비 개발·보급 및 전기화재 예방 시스템 연구·개발 등에 관한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9조제6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전기화재의 대비·대응을 위한 소화장비 개발·보급 및 예방 시스템 연구·개발에 관한 사업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(기금의 사용) 기금은 다음	제49조(기금의 사용)
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	
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의2. 전기화재의 대비·대응을
	위한 소화장비 개발·보급 및
	예방시스템 연구·개발에 관
	<u>한 사업</u>
7. ~ 11. (생 략)	7. ~ 11. (현행과 같음)